

2026년도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사업(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산) 신규 과제 공모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사업(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산)의 신규 과제 선정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0일

<주무부처>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 경 훈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

1. 사업 목적

-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확산을 통해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국제 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통해 중장기 협력 기반 및 신뢰 구축

2. 2026년 신규 과제 지원 계획 및 규모(안)

- 공모 방식 : 자유 공모

내역사업명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산		
지원 내용	다양한 국가/기관의 우수 연구자와 탄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협력 기반 확장		
지원 단가	연 6억 원 이내(간접비 포함, 단 1차년도는 연구 기간이 총 6개월이므로 3억 원 이내로 지원)		
지원 기간	6년(3+3년)	지원 과제 수	5건 이내
총연구기간	1단계(1~3년 차)	2026.7.1.~2028.12.31.(총 30개월) ※ 1차년도 연구 기간 : 2026.7.1.~2026.12.31.(6개월)	
	2단계(4~6년 차)	2029.1.1.~2031.12.31.(총 36개월)	
지원 분야*	① (전략기술) 미래 성장과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제 협력 ② (기후변화)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분야 소재/부품 공동연구 ③ (환경오염)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 등 공통 문제해결 과제 ④ (재난·안전) 자연·사회재난 대응기술 개발, 사이버공격 등 신종 위협 대응 ⑤ (보건·감염병) 암·희귀질환 등 대응, 신종 감염병 위기 분석 및 대응을 위한 감염병 진단 및 치료 기술		

* 선정 평가 시 '지원 분야'별 배분은 미고려(미선정되는 분야도 있을 수 있음), 중복 선택 가능

※ 단계 평가를 통하여 연구비 축소 및 계속 지원 여부 결정(단계 평가 시 별도 안내)

3. 신청 자격 및 참여 제한

□ 신청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목, 제2목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 ③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 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시행령 제2조] ① 동법 제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연구책임자의 자격 및 요건

- 혁신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1항 1목 및 2목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혁신법 제6조]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가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 성과 창출·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혁신법 제7조]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 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또는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시 **정년 보장 임용확약서 등의 서류 필수 제출**

□ 신청 및 수행 제한

- (참여 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처분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 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 제한 여부 확인 요망(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https://www.ntis.go.kr/ThMain.do>)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과제 신청 후 신규 과제 선정 중 참여 제한 조치된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제재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
 - ※ 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및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동법 시행령 제59조
- (3책 5공)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5개 이내**이며,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단위과제 기준)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함
 - ※ 단, 연구개발 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 과제 등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함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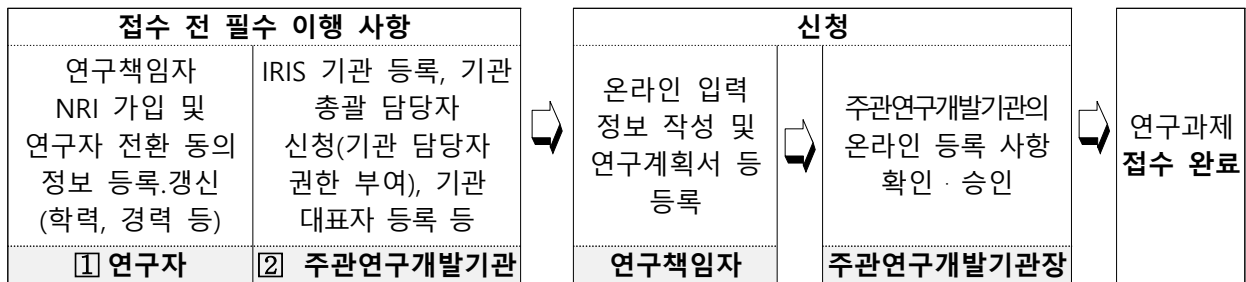
1. 제9조 제2항 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 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 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 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 제1호·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 활동 사업 관련 연구개발 과제
- 4의 2.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 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 사업 관련 연구개발 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 과제
가. 법 제2조 제3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 과제

- (유사 과제 신청 제한) 기존 유사 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한다면 신규 과제 신청을 지양하므로 신청 예정인 연구계획과 기지원된 국가 연구개발 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 차별성 검토 방법 : NTIS 홈페이지 로그인 → 과제 참여·관리 → 차별성 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신규 선정에서 제외 가능
-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는 신규 과제 신청 불가
 - (대상 사업) 해외우수연구기관 공동연구, 글로벌연구네트워크확산, 협력네트워크 확산, 협력네트워크 고도화, 탑-티어(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절차

-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main.do>)에서 온라인 접수 및 제출 서류(연구계획서 등)를 탑재한 후 주관연구개발 기관 확인 및 승인 후 접수 완료
-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별도 업로드
(일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공동 또는 위탁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 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별도 계획서 제출 불필요)



- ※ 사전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 완료 가능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 소속 기관의 담당자에게 확인 요망

▶ IRIS를 통한 과제 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이 있으니 과제 신청에 차질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및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① (연구자) ①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 연구자 번호 발급) ③ NRI 개인정보 중 학력 및 경력*, 주요 연구 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 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 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과 ②번은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 연구자 전원 필수(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 제외), ③ 번은 연구책임자만 필수

②(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내 기관 등록, 기관 총괄 담당자 신청(기관 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 대표자 등록 등

※ 기관 대표자 및 기관(총괄) 담당자도 반드시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 연구자 번호 발급)를 완료해야 하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 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과제 신청 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 사항을 조치해야 함

※ 기관 보유 시설 장비 입력: NRI에 등록된 시설 장비를 선택하여 추가

- 등록 방법: 기관 총괄 담당자 NRI 로그인 > [R&D고객센터]> [보유장비정보] 메뉴에서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시 유의 사항 >

- 과제 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 요망
- <00대학교> 기관 정보(기관 대표자 및 총괄담당자 신청, 기관 담당자 승인 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 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 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 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를 등록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한해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 가능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 문의 게시판 활용

- (과제 접수 매뉴얼) IRIS 로그인 → R&D 업무포탈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탈-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안내서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 귀책은 과제 신청자에게 있음
- (접수 완료) 연구개발 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 최종 확인 완료 이후 제출 가능. 제출된 연구개발 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연구개발 계획서 수정은 연구책임자가 신청 마감일까지만 가능

5.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구분	내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신청 마감일)	2026.2.10.(화) ~ 2026.4.20.(월) 18:00:00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2026.2.10.(화) ~ 2026.4.22.(수) 18:00: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 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 사항에 대해 연구개발 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접수 중** 또는 **기관 승인 요청**으로 접수 기간이 마감되는 경우 **미접수** 처리되오니 특히 유의 바람

□ 제출 서류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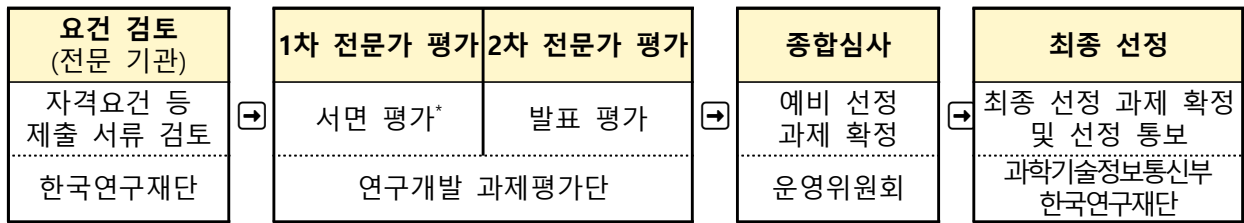
신청 시	협약 시
① 연구개발 계획서(신청용)	① 연구개발 계획서(협약용)
②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②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및 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③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및 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③ 연구개발 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④ 접수일 기준 수행/신청 중인 과제 현황	④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해당 시)
⑤ (해당 시) 해외 연구 기관과의 협력 문서 전문(Letter of Intent(LOI) 등)	⑤ (해당 시)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장비 도입 계획 시 연구시설 장비 심의요청서
	⑥ (해당 시) 해외 연구 기관과의 협력 문서 전문(Letter of Intent(LOI) 등)
	⑦ (해당 시) 해외 연구 기관과의 양해각서(MOU* 등)
	* 주요 내용 :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 공간 마련, 인력 교류(상호 파견), 지식재산권 등 연구 성과 배분, 국제공동연구 개발비 산정 등
	※ 국제공동연구 개발비 집행 전 해외 협력기관과의 국제공동 계약서 필수 제출

□ 과제 접수 유의 사항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함
 - ※ 지원 과제 수 대비 신청 과제 수 경쟁률이 일대일인 경우 단독응모임
-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는 분야가 있을 수 있음
- 사업 공고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연구개발 계획서 및 증빙자료에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 취소 등 제재 가능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 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연구개발 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 기간 등 조정 가능
- 단계 평가 결과 및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구목표 및 내용 조정, 연구비 증감, 지원 중단, 조기 종료 등 가능
- 각종 증빙자료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이나, 참여 제한의 경우 신청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주관 또는 공동연구 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 ※ 단, 연구개발 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 연구개발 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 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 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 등 유관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함
 -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연구시설 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시설 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제출(해당 시)
 - ※ 연구시설 장비 도입 심의요청서는 협약 시 제출하며,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 도입 예정 시 필수로 '국가 연구시설·장비 심의평가단' 별도 심의 신청
- 연구비 내 국제공동연구 개발비 계상 시 국제공동연구 개발비 사용에 관한 국내 연구개발 기관과 해외기관 간 계약서 제출(해당 시)
 - ※ 해외기관과의 계약서는 협약 시 제출 가능하며 해당 계약서 내 해외기관의 역할, 국제공동연구 개발비를 통한 결과물 및 종료일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본 공고문은 공고 기간 내 수정할 수 있으며, 공고 내용 수정 시 별도 공지

6. 평가 방법(안)

□ 평가 절차



* 신청 과제 수가 선정 과제 수의 2배수 미만일 시 서면 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요건 검토)**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 자격요건 검토

※ 요건 미충족 시 1차 평가대상에서 제외

○ **(1차 평가)** 전문가 서면 평가로 실시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2차 평가대상 과제 선정

- 연구 목표 및 내용, 연구진 연구 역량, 기대 성과 등 기관 차원 역량 중점 평가

○ **(2차 평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발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화상 발표 평가 또는 비대면 심층 평가로 시행할 수 있음

-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과제 지원 의지, 대내외

협력 방안 및 인재 양성 계획, 자립화 방안 우수성 등을 중점 평가

○ **(종합심사)** 정책 기본 방향을 고려하여 종합심사 및 예비 선정 과제 확정

○ **(최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정 과제 최종 확정 및 신규 선정 과제 통보

□ 평가지표

평가 항목	세부 항목	배점	
		1차	2차
연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목표의 창의성 및 명확성 연구 수행 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국제 협력 연구개발(R&D) 과제로서의 연구 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국내외 연구 동향을 고려한 연구 목표 및 성과 지표 설정 수준의 적절성 등 * 자율성과 지표의 타당성 등 포함 국내(outbound), 해외(inbound) 교류 인력의 육성 및 활용 계획 	30	20
연구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연구 역량(우수성) 국내외 연구진의 연구 역량을 고려한 연구 목표 및 성과 지표의 실현 가능성 	20	20
연구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기관 간 역할 분담의 적절성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를 통한 성과 창출 전략의 적절성 	25	30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결과물의 우수성 및 활용 가치 해외 연구 기관과의 연구개발 성과 배분 및 활용 계획의 적절성 등 사업 종료 후 연구 성과 및 네트워크 활용 계획의 우수성 사업 종료 후 기 구축된 네트워크 지속을 위한 협력 방안 	25	30
합계		100	100

□ 차별성 검토

- NTIS 홈페이지 내 [차별성 검토] 및 타 신청 과제계획서의 내용 비교 이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해 동 사업 신청 과제에 대한 차별성 검토
- 연구 목표, 연구 내용(R&D, 글로벌 협력 내용 등) 등을 중심으로 검토
- ※ 관련 규정 : 혁신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12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제1호에 따른 차별성을 검토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 과제와 다른 연구개발 과제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경쟁 또는 상호 보완의 필요성
2. 연구개발 주제·목표·수행 방식의 차이점

□ 평가 결과 동점 시 우선 선발 기준

- 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도권 이외 소재 기관인 경우
- 단, 4대 과학기술원(KAIST(대전), GIST(광주), DGIST(대구), UNIST(울산)) 및 포항공과대학은 제외
- ※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 과제 규모 및 분야 등을 고려하여 평가 계획 수립 시 확정

7. 선정 과제 필수 지원조건

구분	내용
① MOU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 등 국내↔해외 연구기관 간 기본적인 합의 사항을 위한 기관장급 양해각서(MOU) 등 체결 필수(2차년도 이내) * MOU 내용은 기관 사정 및 연구 성격 등을 고려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공동연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여야 하며 공동연구 협력 지속성 등은 정성적인 평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② 센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해외 협력기관 내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지속 운영(2차년도 이내) ※ 국내-해외 연구진 공동연구를 위하여 국내 기관에 공간 마련
③ 인력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연구진 파견, 해외 연구진 유치 등 양방향 교류(100일 이상) ※ 단, 1단계 1차년도는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40일 이상 교류 시 실적으로 인정, 연구책임자는 제외 1) Out-bound(파견(2명 이상)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관 박사후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er) 이하로 해외 협력 기관에 20일 이상 연속 체류 ※ 대상 기관(인프라 등) 및 연구 내용 연계 필요 2) In-bound(유치(1명 이상),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연구 기관의 박사과정생 이상의 연구원으로 체류 목표 제시 3) [단체] 심포지엄 등 국내↔해외기관 5인 이상 단체교류 ※ 단체 인정 기준 : 연구책임자 포함 가능, 동 과제 직접 관련으로 참여기관 내에서 개최한 경우만 인정 ※ 단체 교류 계산식 = 일수 x 인원 x 0.5

※ 지원 조건을 미이행할 때 연차 점검(컨설팅) 또는 단계 평가 시 연구비 감액 또는 지원 중단 등 가능

8. 기타 유의 사항

□ 국제공동연구 개발비 계상 기준

- 직접비 총액*의 최대 15%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

*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와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

구분	내용	비고
계상 기준	· 직접비의 15% 이내 계상 가능	· 주관/공동연구기관 포함
사용 대상자	· 해외 협력 기관	· 연구계획서 상 명시된 협력기관
지급 방식	· 계좌이체	
집행 범위	· 국내 연구기관 연구자의 해외 파견 시 체류 비용 · 해외 협력기관 연구자의 국내 방문 시 체류 비용 · 해외협력기관의 인건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기준에 따라 사용 ※ 해외 협력기관의 연구시설·장비비 집행 불가
정산 방법	· 별도 정산 불요	
증빙 자료	협약 시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국내연구개발기관과 해외기관 간 계약서 제출 필요 ※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과 협약 체결 시 계약서 필수 제출
	집행 시	· 계좌이체 증명서(국제공동연구 개발비 이체 내역) · 국내(해외) 연구자 파견 또는 방문 시 체류에 필요한 일체 서류(항공권, 숙박 영수증 등)

※ 세부 내용은 별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12.)」 등 참조

□ 간접비 산정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7조 제2항 제6호 및 제3항에 의거, 간접비 비율을 5%로 제한
- (간접비 계산식) (직접비-현물-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 × 5%

[제37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 비율을 정부 출연기관별 간접비 고시 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간접비 비율을 정부 출연기관별 간접비 고시 비율보다 낮거나 높게 적용할 수 있다.

6.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 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 최초 협약 체결 시 고시된 간접비 산정기준을 다년도 협약 종료 시까지 유지

□ 평가 및 기획 적극 참여(의무 사항)

- 연구자는 평가 및 사업 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화된 평가·기획 문화 정착에 기여하여야 함
- (과제 성실 수행) 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노트 지침」 제8조 제1항 및 제4~6조에 의거, 연구 노트(지침 제2조 제4항)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2조] 4. "연구노트"란 혁신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로써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제8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 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 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삼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논문 사사 표기 안내

- 연구 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하단의 사사를 표기해야 하며, 사사 문구 미표기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국문 표기** :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IRIS 과제번호).

▶ **영문 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IRIS 과제번호).

* MSI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성과는 논문, 특허 등 실제 성과 명칭으로 대체 사용 가능

□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 활용 안내

- 한국연구재단 지원 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 계획서 및 연차·단계·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작성한 경우,

① 해당 자료의 적절한 위치*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권장)

*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판](‘25.9, 한국연구재단) 참조

▶ 표기 항목(예시) : AI 도구 회사·연도, AI 도구 이름(버전, 출시일자/활용일자), 자료 유형*, URL, 활용방법 등

* 자료 유형 : 대형언어모델(LLM), 소프트웨어(SPSS, MATLAB 등 통계나 수치분석 도구 등) 같은 AI 도구의 유형

② 연구자가 직접 출처를 검증하여 AI 활용 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연구윤리 위반 가능성을 점검(필요시 수정·보완)

※ AI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표절, 위조, 변조 등 다양한 연구진실성 위반 사례 예방을 위한

③ AI 도구 활용으로 중요한 연구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연구 정보 : 연구 데이터, 과제 정보 및 수행자의 개인정보

- 연구개발계획서 등 각종 연구자료를 AI 도구에 업로드하여 연구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AI 도구를 활용한 연구자에게 책임이 있음

9. 추진 일정

일정	내용
2월 말	해외우수연구기관협력허브 구축사업 신규 과제 사업 설명회
4월 20일(월) 18:00	연구책임자 신청 마감일
4월 22일(수) 18:00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검토 및 승인 마감일
4월~6월	선정 평가 시행
6월 초중순	예비 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6월 중순	과학기술 국제화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및 최종 선정 과제 확정
6월 말	최종 선정 과제 공고 및 협약
7월 1일 이후	신규 선정 과제 연구 개시

※ 향후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0. 문의처

- ①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1877-2041, 042-862-1500
- ② (사업 내용 및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국제협력총괄팀
 - 02-3460-5688 / shlucia@nrf.re.kr

1 연차 점검, 단계 및 최종 평가 등

연차 점검

- 1차년도는 연구자 부담 완화 및 연구몰입도 제고를 위해 과제별 연차 보고서에 대해 전문가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서면 컨설팅 형태로 연차 점검 시행

단계 및 최종 평가

구분	단계 평가		최종 평가
보고서 제출	일정	(단계별) 단계 종료 2개월 전	연구개발 과제 협약 종료일 후 60일 이내 제출
	서류	단계보고서 온라인 제출	최종보고서 온라인 제출
내용	'전문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연구수행 과정의 성실성, 당초 연구계획 대비 목표 달성 수준,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질적 우수성 및 향후 연구 계획 등을 중점 평가		연구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목표 달성도 및 질적 성과 지표(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등)로 종합 평가

※ 과제 수행단계 중 관련법, 제도 및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이행 조건 등 변경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 및 매뉴얼 참고

2 성과 관리

- (성과 검증) 동 사업의 연구 성과임을 검증(논문 제출일, 특허 출원일 등)하여 실질적 성과관리 실시. 출원인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어야 하며, 타 기관인 경우 **기술이전 등 관련 증빙 검토**
- (질적 평가) 논문 질적 지표로서 표준화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mrnIF) 적용, 출원 특허가 등록된 경우, 한국 특허 평가 시스템(K-PEG) 지수로 평가
- (연구 인력 교류) 해외 연구자를 유치할 경우 **박사과정생 이상**, 국내 연구자를 파견할 경우 **박사후연구원 이하 연구원** 위주로 관리함
- (연구 인력 양성) 해외 연구 기관의 우수 연구 인력 유입(석·박사과정)을 통한 고급 인력 양성,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 인력이 해외기관 박사과정 또는 박사후연구원으로 진입하는 연계형 인력 양성
- (기술사업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특허 등을 기업에 기술 실시 계약(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 허여*(許與) 등 실적을 평가
 - ※ 기술 실시 계약 시 관련 내용은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보고
 - * 원개발자의 허가를 받아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